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무원인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영 제10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제9항을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한다.

3. 주요내용

가.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(「군인사법」 제37조제3항의 행위)를 한 군인의 군무원 채용

1) 법 제7조제2항에 제9항에서 “복무 중에 「군인사법」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서, 복무 중에 「군인사법」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으로 채용하는 경우”로 한다.

2) 법 개정에 따라, 복무 중에 「군인사법」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적용받게되는 영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“복무 중에 「군인사법」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(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)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

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(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사람”에서, “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(예비역을 포함)임이 확인된 사람”으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확대한다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23.~7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(예비역을 포함한다)임이 확인된 사람. 이 경우 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경력경쟁채용 요건)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8. (생략) 9.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복무 중에 「군인사법」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(예비역군인을 포함한다)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(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사람 10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10조(경력경쟁채용 요건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(예비역을 포함한다)임이 확인된 사람. 이 경우 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10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군무원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91